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추승우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73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명

발 의 자 : 추승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은주, 홍성룡, 김상훈, 정진철,
이병도, 이승미, 박순규, 김태호,
권수정, 전병주, 김제리, 최 선,
김경영, 문영민, 김종무, 이호대,
장인홍, 이태성, 김인제, 김혜련,
문병훈, 송재혁, 유정희, 김용석,
이광성, 오현정, 최정순, 고병국,
장상기, 이정인, 박기재, 김생환,
송도호, 서윤기, 이광호, 김경우,
임만균, 황인구, 경만선, 봉양순,
김화숙 의원(41명)

1. 제안이유

-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,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신설(안 제7조의4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 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4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)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|--|
| <p>〈신 설〉</p> | <p>제7조의4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 <u>장 관리)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 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 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 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.</p> |